##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82

발의연월일: 2021. 3. 3.

발 의 자:이상민·고용진·기동민

김경협 • 김교흥 • 김영호

박성준・송재호・어기구

이용선 · 정춘숙 · 홍익표

황운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 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재외동포재단 등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 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 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 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담조직의 설치)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2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	
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u>&lt;후단 신설&gt;</u>	
	<u>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공</u>
	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
	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
	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u>수 있다.</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7조의2(전담조직의 설치) ① 외
	교부장관은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
	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